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관제구역, 호출명칭, 관제통신 채널, 신고절차 등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군산·목포 해역에 확대되는 관제구역·호출명칭·관제통신 채널을 명시하고 별표 1(선박교통관제구역)과 별표 4(관제통신 제원)를 통합(안 제4조, 제10조, 별표 1·4)
- 나. 도선선 등 관제대상선박과 선장이 준수해야 할 항법 등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표현(안 제5조, 제9조)
- 다. 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11조)
- 라. 관제대상선박이 군산·목포 광역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 신고절차 마련(안 별표 3)
- 마. 그 밖에 상위법령과 다르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조~제3조, 제5조제2호, 제7조, 제8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2조

부터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칙은**”을 “**고시는**”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를 “**관제대상선박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관서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를 “**(다른 규칙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으로, “**규칙에서**”를 “**고시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등)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호 중 “**「해운법」 제2조제1의2호**”를 “**「해운법」 제2조제1호**”

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예선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신”을 “예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 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제6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영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제통신”을 “제1항에 따른 관제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사항을”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으로 한다.

제9조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

조제2항 및 제17조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최고속력

다.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
서의 항로지정제도

라.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
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영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영 제10조제3항에 따
라 수기로 대체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
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이 종료될 때
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제12조 중 “규칙”을 “고시”로,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규칙은</u> 「<u>선박교 통관제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 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 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이 <u>규칙은</u> 「<u>선 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u>와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 관제구역(이하 "<u>선박교통관제 구역"이라 한다)</u>에서의 법 제13 조에 따른 <u>관제대상선박(이하 "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u>에 적 용한다.</u></p> <p>제3조(<u>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u>) <u>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 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u></p>	<p>제1조(목적) -- <u>고시는</u> ----- ----- ----- ----- ----- ----- ----- -----.</p> <p>제2조(적용 범위) -- <u>고시는</u>----- ----- ----- <u>제2조제2호에 따 른 선박교통관제구역</u>----- ----- ----- ----- <u>관제대상선박과 법 제 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 제관서에 적용한다.</u></p> <p>제3조(<u>다른 규칙과의 관계</u>) <u>선박 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u> ----- ----- ----- ----- <u>고시에서</u> -</p>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 가.·나. (생략)
 -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마. 해양조사선·순찰선·표

-----.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등)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
-----.

1. (현행과 같음)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
 3. -----

-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

----- 예선
-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

지선 · 측량선 · 어업지도
선 · 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 운영하는 관공선

<신 설>

<신 설>

제6조(사용명칭) 「선박교통관제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
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진입 · 진출 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

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
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
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 · 순찰선 · 표
지선 · 측량선 · 어업지도
선 · 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소유 · 운영하는 선
박

제6조(사용명칭) 영 제7조제1항제
1호-----

-----.

제7조(진입 · 진출 신고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
· 하선하는 경우 관할 선박교통
관제관서와의 관제통신을 도선
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
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를 거
쳐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
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하고,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
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
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
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 따라야 한다.

1. 2. (생략)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
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
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제1항에 따른 관
제통신-----.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3
항 및 제4항에 따라 -----.

제8조(선박운항통제) -----

----- 선박
교통관제관서에서 선박을 안전
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
--.

1. 2. (현행과 같음)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정된 항로 및 항법 준수

2. 지정된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

<신 설>

제10조(관제통신 제원)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최고속력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영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기로 대체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 고시-----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